

광주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가단52891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고 F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형두

변론 종결 2024. 8. 23.

판결 선고 2024. 11. 22.

주 문

1. 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3. 2. 9. 접수 제14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B	은행 지점	2021-03-24	2026-03-23	80,000,000	72,000,000	피고	A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C	은행 풍향동지점	2022-05-04	2023-05-03	130,000,000	130,000,000	피고	A
농식품기업운전자금대출							

나. 원고와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하면서 A의 주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①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기한 내에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 보증채무 중 미이행 채무액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소정 보증요율에 0.5%를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③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A은 2023. 4. 7. 및 2023. 4. 24. 폐업으로 인한 기한이익상실로 위 각 주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3. 5. 19. D은행에 62,944,511원, 2023. 5. 19. E은행에 131,607,79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A은 원고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194,552,307원, 미수위약금 206,330원, 미수보증료 7,520원, 대지급금 204,854원과 대위변제금 194,552,30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구상권 채무가 발생하였다.

라. 한편, A은 2023. 2.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3. 2.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접수 제1462호로 피고 명의로 2023. 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은 다음과 같이 적극재산의 가액이 264,808,617원(근저당권자 G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공제하지 않음)이고, 소극재산의 가액이 338,349,530원(주채무를 기준으로 함)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	거래가액	20,000,000원	20,000,000원
광주 광산구 H, I, J 토지	2023. 5. 16. 기준 3필지 시가 합계	605,933,000원	244,808,617원
K조합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61,124,383원		
G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실제 채무액 미확인)		
합계	264,808,617원		

[소극재산]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	28,000,000원	338,349,530원
E은행 대출금 채무	130,000,000원	
D은행 대출금 채무	70,000,000원	
L은행 대출금 채무	70,000,000원	
M저축은행 대출금 채무	40,000,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체납	349,530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2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A의 N에 대한 20,000,000원의 채무를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위 인정사실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나머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킨다는 것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에 의하여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2.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원고의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A은 E은행에 대하여 2023. 3. 2.까지, D은행에 대하여 2023. 3. 22.까지만 주채무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위 인정사실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위와 같이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민법 제406조 제1항).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A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A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정지선

별지